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212162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보람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3. 9.
판 결 선 고	2021.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9.부터 2021.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4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C'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6. 4. 24.부터 2019. 12. 12.까지 'D'이라는 상호로 금형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자신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C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2019. 1. 29. 총 9회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1. 2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3012), 위 약식명령은 2020. 2. 11.경 확정되었다.

다. 위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고는 2019. 2. 7.부터 2019. 6. 24.까지 총 5회 불법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4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위 모듈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의 컴퓨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별지 기재 각 하위 모듈 프로그램이 전부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각 하위 모듈 프로그램의 소비자가격 상당액의 총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명시적 일부 청구).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주장에 대한 판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이 때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프로그램 사용자와 매매계약이 아닌 이용허락, 즉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해왔는데 사용자는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기재와 같이 기능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하위 모듈이 존재하는데 피고와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4

이른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경우 위 하위 모듈이 전체적으로 설치되고, 별지 기재의 하위 모듈을 모두 설치하는 경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18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사정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 전체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각 모듈의 경우 그 기능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가 원고가 제시하는 하위 모듈을 모두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모듈 전부를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의 정가 합계를 그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4

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구체적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과세관청에 2018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액이 22,996,584원에 불과하고 2019. 12. 12.경 금형설계 서비스업을 폐업한 점, 피고가 불법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횟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사용이 적발된 이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을 취급하는 구매처들로부터 일부 모듈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13,615,000원 혹은 16,700,000원(부가세 별도)에 납품받을 것을 제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4

판사 강태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4

[ ] 크랙버전 풀모듈 사용 시 침해가격의 산정

[ ] 크랙버전(무면허프로그램: [ ]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잠금장치 또는 공인 인증키 없이 사용하는 경우)은 기본적으로 설치시 [ ]프로그램이 갖추고 있는 모든 모듈이 설치되어 지기 때문에 풀모듈의 크랙버전은 다음과 같이 정품가격으로 침해가격이 산정됩니다.

1. System

Code	Item Name	KRW
		400,000
		800,0000

2. CAD Modules

Code	Item Name	KRW
		4,700,000
		6,000,000
		2,400,000
		3,600,000
		1,800,000
		2,200,000
		600,000
		3,300,000
		1,100,000
		-

3.CAM Modules

Code	Item Name	KRW
		3,100,000
		2,500,000
		3,400,000
		1,500,000
		3,4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4

	5,400,000
	6,600,000
	4,000,000
	4,000,000
	3,300,000
	4,300,000

4. CAD Bundles

Code	Item Name	KRW
		12,500,000

5. Mould / Progress Modules

Code	Item Name	KRW
		4,000,000
		2,800,000
		4,100,000
		1,700,000
		3,300,000
		2,400,000
		1,100,000
		3,800,000
		6,500,000

6. Flow Modules

Code	Item Name	KRW
		24,000,000
		9,500,000
		9,500,000
		3,200,000
		6,500,000

7. Interfaces Modules

Code	Item Name	KRW
		2,200,000
		2,500,000
		2,200,000
		2,2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4

	2,200,000
	2,200,000

총 합계 : 184,000,000 KRW